#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22 발의연월일: 2023. 4. 28.

발 의 자:정우택・황보승희・이채익

박대수 · 최춘식 · 유경준

송석준 • 태영호 • 정운천

백종헌 • 윤창현 • 홍문표

노용호 · 임병헌 · 박덕흠

조경태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4만 3,100건에서 2019년 10만 7,078 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증가세로 전환됨. 또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 로 여전히 매우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19. 7%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을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했음.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시면 원천적으로 운 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지 적이 있음.

또한, 2020. 12. 17.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한다"고 답변해 시동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82조제2항제1호의2, 제9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 ① 제93 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 전 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

동차등에 대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에 대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44조, 제45조"를 "제45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년
  - 가.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 우
- 다.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다.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 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 년
  -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 7의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

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 우

제1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손 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적용례) 제 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

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 ① 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 1.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점검 또 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교육 ·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 된 자동차등에 대하여 음주운 전방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 부 등에 관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3 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에 대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_
	_
	_
	-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 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년

가.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 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다.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 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 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신 설>

	<u> </u>
2.	(현행과 같음)
3.	
	가. <u>제45조</u>

<삭 제>

다.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신 설>

4. (생략)

<u><신</u>설>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위반한 날부터 3년

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	(현행과	같음)
--	----	------	-----

5.	. <u>자</u>	-동	차등	을-	 	 	

5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 라. (생 략)

7. (생략)

<신 설>

을 말한다)부터 3년
<u>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u>
을 2회 위반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u>Ŷ</u>
6
<삭 제>

<삭 제>

다. · 라.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8. • 9. (생략)

③ (생략)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 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u>을 1회 이상 위반(제43소 또</u>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u> 2년</u>
8.•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u>제3호, 3호의2,</u>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2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48조(벌칙)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
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1. ~ 6. (현행과 같음)
7.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조하
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